

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: '93. 7. 6
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 다. 회부일자 : '93. 7. 21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부천시 도축장설치운영조례 별표1을 개정 양(염소)의 도축해체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서
- 도축장 경영합리화 및 위생적인 육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도축해체 수수료(조례 별표 1)개정
- * 양(염소)의 1,600원을 4,900원으로 정함.

진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양을 도축할 때 성남, 안양의 경우는 부천시보다 490원을 더 받고 있는데 현 수수료를 더 높일 용의는	○ 도축해체 수수료는 경기도 승인가격이며 성남, 안양은 도축장이지만 부천시는 간이 도축장이라 490원을 더 받을 수 없음
○ 축협에서 도축장 운영을 할 경우 직자가 낫다고 하는데 부천시가 인수하게 된 동기는	○ 직자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축산물 위생처리법상 임대나 위탁을 할 수 없어 부천시가 인수하게 되었음.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

없 음

나. 찬성토론

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거 임대나 위탁을 줄 수는 없으며, 비위생적인 고기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해서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함.

5. 수정안내용

없 음

6. 심사결과

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없 음

8. 기타필요한사항

없 음

9. 체계적 심사내용

없 음

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183
의 건	제21회
년 월 일	(93. 7. 23)

제출년월일 : 1993. 7. 6

제 안 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부천시 도축장설치 운영조례 별표1을 개정 양(업소)의 도축해체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도축장 경영합리화 및 위생적인 육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도축해체수수료 (조례 별표1)개정

※ 양(업소)의 1,600원을 4,900원으로 한다.

[법적근거]

- 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
-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
- 도축해체수수료 승인공문 (경기도축산 51575-693 : '93. 4. 23)

부천시 도축장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수수료)[별표1]을 “별지”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)

[별표1]

도 축 해 체 수 수 료

도 축 구 분	기 준	수 수 료 액
소 · 말	1두당	24,000원
돼 지	"	4,900원
양 (업 소)	"	4,900원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		개 정 안		
[별표1]			[별표1]		
도축구분	기 준	수수료액	도축구분	기 준	수수료액
소·말	(생 략)		소·말	(현행과 같음)	
돼지	(생 략)		돼지	(현행과 같음)	
양(염소)	1두당	1,600원	양(염소)		4,900원

참 고 자 료
(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개정안)

— 목 차 —

도축장현황
타시군 도축해체수수료 징수현황
축산물작업장수수료 조정승인 공문사본(경기도)

도 축 장 현 황

□ 현 황

○ 시설규모

- 위 치 :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66-1
- 대 표 자 : 부 천 시 장
- 부 지 면 적 : 4,001㎡ (1,210평)
- 건 물 면 적 : 844㎡ (255평)
- 개 설 년 도 : 1981년
- 이용업소수 : 550개업소
- 도 축 실 적

구 분	1991년	1992년	1993. 5현재	비 고
소	5,435	5,435	2,565	
돼 지	94,567	106,031	39,335	
양(염소)	-	-	-	

※ '93년 5월말 까지 양(염소)의 도축실적은 없으나 '93. 6월부터는 주당 20~30두 정도를 도축하고 있음.

타시,군도축장도축해체수수료징수현황

구 분	단 위	금 액	해 당 시 군
도 축 장	1두	5,390원	성남시, 안양시, 평택군, 미금시, 고양군, 광주군, 포천군, 이천군
간이도축장	1두	4,900원	수원시, 의정부시, 동두천시, 시흥시, 남양주군, 여주군, 화성군, 파주군, 연천군, 가평군, 양평군, 용인군, 안성군, 김포군, 강화군, 용진군

“새 질서 새 생활 실천”

경 기 도

우 441-701/경기 수원 권선 메산로3가 산1번지 / (0331)42-4624 행(2721) / 전송4300

문서번호 축산 51575-693

시행일자 1993. 4. 23 (3)

경 유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선 결			결 제 · 공 람	
접 수	일자 시간	1993.		
	번호	1141		
처 리 과				
담 당 자				

제 목 수축(양) 도축 수수료 승인

1. 파주 축산 51575-584 (93. 4. 17)호와 관련임.

2. 대호와 관련하여 양 도축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으니 작업장에 승인사항을 통보하고 작업장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.

○ 양 도축 수수료 승인 내역

축종	신청액	승 인 액		비 고
		특급도축장	1급도축장	
양 돼 지	27,390원	5,390원	4,900원	• 돼지도축 수수료에 준함. • 현행수수료 (92. 10. 1 시행)
		5,390원	4,900원	

끝.

경 기 도 지 사

수신처 : 러 (제외 06, 07, 09, 11, 12, 15, 17, 18, 19, 20, 23)